

## 2024 포인트 종합소득세 실무 정오표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p. 83 중단	② 계속사업자: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하	② 계속사업자: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규모 <u>미만</u>
p. 123 중단	① 제조업 7.5억 (2022.5.1. 신규사업자)	① 제조업 7.5억 ( <u>2023.5.1.</u> 신규사업자)
p. 128 상단	(1) 미제출 가산세 표추가	Max(①, ②)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× $\frac{\text{사업소득금액}^*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5\%$ ②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× 0.02%
p. 142 각주	8) 무도장, 기타 사행시설의 운영업 및 안마업은 2024.1.1.부터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본다.	8) 무도장, 기타 사행시설의 운영업 및 안마업은 <u>2024.3.22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</u> 부터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본다.
p. 269 표	근로소득금액	( <u>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</u> )
p. 295 (2)사례	기준시가 A: 9억원 C: 10억원 D: 11억원 ① 본인: 9억원 이하인 1주택 ② 동생: 9억원 초과 주택 ③ 부친: 9억원 초과 주택	기준시가 A: <u>12억원</u> C: <u>13억원</u> D: <u>14억원</u> ① 본인: <u>12억원</u> 이하인 1주택 ② 동생: <u>12억원</u> 초과 주택 ③ 부친: <u>12억원</u> 초과 주택
p. 303 상단	-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	- 소형주택은 <u>2026년</u>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
p. 334 중단	⑤ 이자소득명세서 소득구분코드 : 11	⑤ 이자소득명세서 소득구분코드 : <u>13</u>
p. 402 중단	1) 공적연금소득 소득금액이 10만원 이하로	1) 공적연금소득 소득금액이 <u>100만원</u> 이하로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p. 473 하단	(2) 본점이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 중기업, 지식기반산업 : 10%	삭제
p. 482 중단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내용추가	③ 창업보육센터 사업자: 5년간 50% ④ 창업벤처중소기업: 5년간 50%
p. 533 하단	2.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 자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: 적용대상	2.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: 적용 <b>배제</b>
p. 628 상단	기준시가: 1,000,000,000 고가주택(9억 초과)에 해당하여 과 세대상	기준시가: <u>1,300,000,000</u> 고가주택(12억 초과)에 해당하여 과세대상
p. 632 상단	기준시가: 1,000,000,000	기준시가: <u>1,300,000,000</u>
p. 636 상단	간주임대료 3,024,000원	간주임대료 <u>4,872,000원</u>
p. 640 상단	간주임대료 2,514,098원	간주임대료 <u>4,061,587원</u>

\*p. 636 계산사례 표 교체

호수	① 월세수입금액	② 간주임대료	③총수입금액 (① + ②)	④ 필요경비	⑤ 소득금액 (③ - ④)
201	4,800,000		4,800,000	2,400,000	2,400,000
202	7,200,000	1,392,000	8,592,000	4,296,000	4,296,000
301	3,000,000	2,610,000	5,610,000	2,805,000	2,805,000
302		870,000	870,000	435,000	435,000
합계	15,000,000	4,872,000	19,872,000	9,936,000	9,936,000

\*p. 637 서식 교체

[별지 제40호 서식(6)] (2024.3.22. 개정)

(3쪽 중 제1쪽)

관리번호	-	<b>( 2023년 귀속 )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</b> <b>(분리과세 소득자용)</b>	거주구분	거주자 <sup>1</sup> / 비거주자 <sup>2</sup>
			내·외국인	내국인 <sup>3</sup> / 외국인 <sup>9</sup>
			거주지국	대한민국 거주지국코드 KR

1 기본사항	① 성 명 임대오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XX길	④ 전자우편주소
	⑤ 주소지 전화번호	⑥ 휴대전화번호
	⑦ 신고유형 ③5 분리과세 ⑧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⑫ 수정신고 ⑭ 기한후신고	
2 환급금 계좌신고	⑨ 금융기관/채신관서명	⑩ 계좌번호
3 세무대리인	⑪ 성명 김태원	⑫ 사업자등록번호 3 7 7 - X X - X X X X X
	⑬ 관리번호 V - X X X X X	⑭ 전화번호

4 종합소득세액의 계산

구 분	합 계	⑬ 주택임대 사업소득	⑭ 연금소득	⑮ 기타소득 (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)	⑯ 기타소득 (가상자산 양도대여)
15 총수입금액		19,872,000			
16 필요경비		9,936,000			
17 공제금액		2,000,000			2,500,000
18 소득금액(과세표준) : 15 - 16 - 17		7,936,000			
19 세율		14%	15%	20%	20%
20 산출세액 : 18 × 19		1,111,040			
21 세액감면					
22 결정세액 : 20 - 21		1,111,040			
23 가산세액 : 가산세액명세(⑳~㉑)의 합계금액					
24 추가납부세액 : ㉒+⑳					
25 합계 : 22+23+24	1,111,040				
26 기납부세액					
27 납부(환급)할 세액 : 25 - 26	1,111,040				

5 농어촌특별세의 계산

28 과세표준 : 21 세액감면란의 금액					
29 세율		20%			
30 산출세액(결정세액) : 28 × 29					
31 가산세액					
32 추가환급세액					
33 합계 : 30+31-32					
34 기납부세액					
35 납부(환급)할 세액 : 33 - 34					

6 가산세액 명세

가 산 세 액 계 산 명 세	구 분	계산기준	기준금액	가산세율	가산세액
	⑳ 무 신 고	부정무신고	무신고납부세액	40/100(60/100)	
			수입금액	14/10,000	
		일반무신고	무신고납부세액	20/100	
			수입금액	7/10,000	
	㉑ 과 소 신 고	부정과소신고	과소신고납부세액	40/100(60/100)	
			수입금액	14/10,000	
	일반과소신고	과소신고납부세액	10/100	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관 리 번호	-	(2023년 귀속)종합소득세 · 농어촌특별세		거주구분	거주자 <sup>1)</sup> / 비거주자 <sup>2)</sup>
		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		내외국인	내국인 <sup>3)</sup> / 외국인 <sup>9)</sup>
				외국인단일세율적용	여 1 / 부 2
				분리과세	여 1 / 부 2
				거주자국	대한민국 / 거주자국코드 / KR

**1 기본사항**

① 성명: 임대육      ② 주민등록번호:      -      ⑤ 사업장 전화번호:      ⑦ 전자우편주소:     

③ 주소: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XX길(구의동)

④ 주소지 전화번호:      ⑧ 기장의무:      ①복식부기의무자      ②간편장부대상자      ③비사업자

⑥ 휴대전화:      ⑨ 신고유형:      ⑪자기조정      ⑫외부조정      ⑬성실신고확인      ⑭간편장부      ⑮추계-기준율      ⑯추계-단순율      ⑰분리과세      ⑱비사업자

⑩ 신고구분:      ⑫정기신고      ⑬수정신고      ⑭경정청구      ⑮기한후신고      ⑯추가신고(인정상여)

⑪ 환급금 계좌신고      ⑫ 금융기관/채신관서명      ⑬ 계좌번호

⑬ 세무 대리인      ⑭ 성명: 김태원      ⑮ 사업자등록번호: 3 7 7 - X X X - X X X X X      ⑯ 전화번호:      ⑰ 대리인      ⑱ 대리구분      ⑲ 기장      ⑳ 조정      ㉑ 신고      ㉒ 성실확인      ㉓ 관리번호: V - X X X X X X      ㉔ 조정번호: 1 - X X X X X

**4 세액의 계산**

구분		종합소득세	농어촌특별세
종합소득금액	⑰	110,000,000	
소득공제	⑳	10,000,000	
과세표준 ( ⑰ - ⑳ )	㉑	100,000,000	④
세율	㉒	35%	⑤
산출세액	㉓	19,560,000	⑥
세액감면	㉔		
세액공제	㉕	70,000	
결정세액	㉖	19,490,000	⑦
	㉗	284,311	⑧
합계 ( ㉖ + ㉗ )	㉘	19,774,311	⑨
가산세	㉙		⑩
추가납부세액 (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)	㉚		⑪
합계 ( ㉘ + ㉙ + ㉚ )	㉛	19,774,311	⑫
기납부세액	㉜		⑬
납부(환급)할 총세액 ( ㉛ - ㉜ )	㉝	19,774,311	⑭
납부특례세액	㉞		⑮
분납할 세액	㉟	10,000,000	⑯
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( ㉝ - ㉞ + ㉟ - ㊱ )	㊲	9,774,311	⑰
국세환급금 총당 신청 환급 종합소득세	㊳		⑱
총당 후 ( 환급 ) 납부세액	㊴		⑲

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70조,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2024년 5월 31일      신고인      임대육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무기장·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세무대리인      김태원 (서명 또는 인)

성동세무서장      귀하

첨부서류(각 1부)      전산입력필      (인)

㉔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

1.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

(단위 : 원)

구 분	㉓ 분리과세 주택임대소 득	㉔ 연금소 득	㉕ 분리과세 기타소득 (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)	㉖ 기타소득 (가상자산 양도·대여)
① 총수입금액	4,061,587			
② 필요경비	2,030,794			
③ 공제금액				2,500,000
④ 소득금액(과세표준) : ① - ② - ③	2,030,793			
⑤ 세율	14%	15%	20%	20%
⑥ 산출세액 : ④ × ⑤	284,311			
⑦ 세액감면				
⑧ 결정세액 : ⑥ - ⑦	284,311			
⑧ 결정세액 합계				

2. 농어촌특별세 계산

(단위 : 원)

⑨ 과세표준 : ⑦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		
⑩ 세율	20%	
⑪ 산출세액 : ⑨ × ⑩		
⑫ 결정세액		